

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영업세 및 증치세에 관한 연구

박상섭* · 신재열** · 편만리***

<요 약>

중국의 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서비스업 관련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 산업과 관련이 높은 조세인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된 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회구조의 변화, 중국내 서비스업 관련 투자의 변화, 용역에 대한 과세의 강화, 대중국 투자현황의 변화 및 한국기업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하여 영업세와 증치세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를 비교하였다.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통합 현황과 시범통합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통합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리체계 확립, 통합과정에서 규정의 충돌에 대한 사전조정,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기간의 단축, 소규모 납세자의 보호, 세율의 적정화,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과 납세의식의 제고를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중국세법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진출하는 기업을 위하여 투자환경변화 동향과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핵심주제어: 영업세, 증치세, 중국세법, 간접세, 중국투자

논문접수일: 2013년 10월 21일 수정일: 2013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20일

* 수원과학대학교 조교수(주저자), titi2772@hanmail.net

** 세무법인리젠 세무사(공동저자), taxshin@hanmail.net

*** (주)티티씨 대표이사(공동저자), 0193145659@hanmail.net

I. 서 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매우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은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서 2011년 2,206억 달러를 기록하며 35배의 증가를 이룩하였다(황재한, 2012). 2004년 이후 대중국 수출입의 규모가 대미수출입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김규형 외, 2010). 한국기업의 대중국 수출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한국기업의 중국진출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비스업의 진출이 증대하고 있다. 중국내 저임금 구조를 이용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중국 진출이 점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그러한 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금융, 문화, 레저 등 다양한 3차 산업의 진출이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속에서 중국진출기업의 서비스 관련 간접세인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분야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신썬 주한중국대사

는 철강, 자동차 등 기존의 수출산업은 이미 성장세가 둔화됐으며,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업은 미래산업 발전의 추세이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서비스업 진출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1) 이는 중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큰 기대를 표현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 소비중심의 내수 확대 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기대하고 있다. 2) 중국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외자기업과 중국기업 간 합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분적인 규제완화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3%에서 2015년에는 47%로 상승할 전망이다(조현승 외, 2012).

중국의 서비스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서비스 관련 세금인 영업세와 증치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의 증가 현황과 관련하여, 서비스업투자 비중의 증가는 영업세 및 증치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업세는 주로 용역의 공급(일부 증치세 부과 대상 용역 제외)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증치세는 주로 재화공급 및 일부 용역(재화의 가공·수선용역)을 과세대

1) 헤럴드경제(2013. 4. 13) 박수진 기자 sjp10@heraldcorp.com

2) 12차 5개년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다.

상으로 한다.

영업세와 증치세는 간접세로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과세 베이스를 갖는 세목이다. 즉 서비스라는 부가가치의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이며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로서 한국은 단일 세목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중국은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가 영업세와 증치세로 나누어져 있다. 부가가치에 대한 소비세가 영업세와 증치세로 분리되어 과세되는 것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으므로, 최근 중국은 영업세와 증치세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의 산업 구조의 변화와 서비스 관련 조세의 변화가 매우 큼에도 한국에서 영업세 및 증치세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한상국·양광평(2011) 및 강철승(2005) 등 소수의 증치세에 관한 연구만을 선행연구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영업세와 증치세의 변화를 중심으로 영업세와 증치세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 및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측면과 관련된 대중국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인건비와 비용의 상승으로 빠르게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제조공장의

중국진출이라는 측면이 점차 쇠퇴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오히려 중국 투자를 철회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등 동남아의 저임금, 저비용 구조가 중국의 투자를 흡수해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조업의 축소와 함께 서비스업의 증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중국에의 투자 추이나 중국내 관련 간접세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영업세와 증치세에 대한 개관 및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거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감면의 특혜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관련 정보 및 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업세와 증치세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다. 따라서 영업세와 증치세의 과세요건 및 최근의 변화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방안 및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중국 진출기업의 전략수립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전략적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중 중국진출기업은 향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I. 영업세 및 증치세 관련 선행연구

1. 중국 영업세 및 증치세 관련 연구

1.1. 대중국투자에 관한 연구

김영래·강철승(2008)은 한국제조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방식 결정요인을 연구하고 있다. 중국에 투자한 1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진출동기에 대하여 단순한 수출생산기지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현지시장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크다고 한다. 황재한(2012)은 중국 투자는 제조업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현지시장 확대목적의 투자가 증가하고 제3국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내 서비스업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2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에 관한 연구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연구는 한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한상국·양광평(2011)의 연구, 강철승(2005)의 연구에서만 중국의 증치세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영업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

다.

한상국·양광평(2011)는 중국 증치세 제도 개혁에서의 입법 문제와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증치세의 발전연혁에 대하여 살펴보고 증치세 제도의 개요 및 증치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증치세 제도의 문제점으로 세부담 불공평의 문제, 이중과세의 문제와 세수관할의 문제 및 입법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다.

강철승(2005)은 증치세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증치세의 문제점으로 신고 납부 및 환급의 절차의 복잡성과 지방세무당국간의 이중과세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방향으로 증치세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첫째, 최근 중국과 관련한 선행연구로서 김영래·강철승(2008), 황재한(2012)의 연구에서는 중국 진출동향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중국투자 환경의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조세에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는 중국 투자환경의 변화 가운데 중국의 간접세인 영업세와 증치세와 관련된 중국의 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에는 영업세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한상국·양광평(2011), 강철승(2005)등 증치세에 관한 부분적인 연구가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영업세와 증치세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또한 선행연구는 단순히 증치세 중심의 소개와 관련된 연구였다. 본 연구는 영업세와 증치세 및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중국 영업세와 증치세를 포괄적인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셋째, 중국의 간접세와 관련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최근의 변화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투자환경과 영업세 및 증치세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중국투자환경 변화

1. 중국의 사회구조의 변화

중국은 소득증가와 사회구조 변화로 소비패턴이 다양화·고급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차산업의 GDP에 대한 공헌도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이규택, 2004). KIET산업경제정보(2012)는 중국의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패턴이 바뀌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고학력

화의 추세로 고임금시장 노동자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020년에 구매력평가(PPP : Purchasing Power Parities) 환율 기준으로 약 1만 4,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소득과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소비패턴과 내수시장의 구조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과거에 비해 생활필수품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의 다변화가 지속될 것이다.

서구문화에 친숙한 세대가 본격적으로 소비를 주도하게 되면서 소비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소비재보다는 사치재의수요가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이며, 특히, 여가생활, 의료, 건강관리 및 미용, 교육, 외식, 문화콘텐츠 관련 소비 등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전통 서비스업보다는 지식서비스의 성장이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2. 서비스관련 산업의 변화

중국정부의 내수중심 정책기조로 서비스산업의 빠른 성장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GDP에

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2009년에 43.4%로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KIET산업경제정보, 2012). 최근 중국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주요산업 비중 변화 추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 서비스산업의 취약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중국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패턴에서 내수주도형 성장패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4조 위안 투자 및 10대 산업진흥계획, 각종 소비촉진정책 등을 수립하고 있다(조현승 외, 2012). 이러한 중국의 장기적 전략에 맞추어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진출증가가 기대된다(홍동문, 2007).

3. 중국의 용역에 대한 과세 강화

이택곤(2010) 및 조현승 외(2012)에 의하면 중국의 용역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다. 가공무역에 대한 과세 강화, 간접수출에 대한 지역별 증치세 강화,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제공의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허권, 상표권 등 법률적 권리의 양도나 사용허가, 상

무부기술수입계약 등록 후 취득한 '기술수입계약등록증'(技術進口合同登記証), 기술제공과 관련한 명백한 증거의 취득, 로열티 외 배당이나 사장급여 등 다른 방법으로 투자금회수 등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용역에 대한 과세 부담률도 증가하고 있다.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0년을 기준으로 증치세는 총세수 대비 28.81%(21,093.48/73,210.79)이며, 영업세는 15.24%(11,157.91/73,210.79)이다. 이러한 조세규모는 2005년 대비 증치세는 190%(21,093.48/10,792.11)상승한 것이며, 영업세는 260%(11,157.91/4,232.46)상승한 것이다. 2000년 대비하면 증치세는 463%(21,093.48/4,553.17)가 상승한 것이고 영업세는 597%(11,157.91/1,868.78)가 상승한 것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영업세와 증치세는 전체세수의 44.05% $((21,093.48 + 11,157.91) / 73,210.79)$ 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세를 포함한 간접세의 비중은 52.35% $((21,093.48 + 11,157.91 + 6,071.65) / 73,210.79)$ 이다. 중국은 직접세(24.15% $((12,843.54 + 4,837.27) / 73,210.79)$)에 비하여 간접세의 비중이 2배 이상 크다. 따라서 간접세에 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표 1> 중국의 세수현황³⁾

단위: 억위안

연도 \ 세목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관세	기타	합계
1978						28.76	91	519.28
1980						33.53	538	571.70
1985	147.70		211.07	696.06		205.21	781	2,040.79
1990	400.00		515.75	716.00		159.01	1,031	2,821.86
1991	406.36		564.00	731.13		187.28	1,101	2,990.17
1992	705.93		658.67	720.78		212.75	999	3,296.91
1993	1,081.48		966.09	678.60		256.47	1,273	4,255.30
1994	2,308.34	487.40	670.02	708.49		272.68	680	5,126.88
1995	2,602.33	541.48	865.56	878.44		291.83	858	6,038.04
1996	2,962.81	620.23	1,052.57	968.48		301.84	1,004	6,909.82
1997	3,283.92	678.70	1,324.27	963.18		319.49	1,664	8,234.04
1998	3,628.46	814.93	1,575.08	925.54		313.04	2,006	9,262.80
1999	3,881.87	820.66	1,668.56	811.41	413.66	562.23	2,524	10,682.58
2000	4,553.17	858.29	1,868.78	999.63	659.64	750.48	2,892	12,581.51
2001	5,357.13	929.99	2,064.09	2,630.87	995.26	840.52	2,484	15,301.38
2002	6,178.39	1,046.32	2,450.33	3,082.79	1,211.78	704.27	2,963	17,636.45
2003	7,236.54	1,182.26	2,844.45	2,919.51	1,418.03	923.13	3,493	20,017.31
2004	9,017.94	1,501.90	3,581.97	3,957.33	1,737.06	1,043.77	3,326	24,165.68
2005	10,792.11	1,633.81	4,232.46	5,343.92	2,094.91	1,066.17	3,615	28,778.54
2006	12,784.81	1,885.69	5,128.71	7,039.60	2,453.71	1,141.78	4,370	34,804.35
2007	15,470.23	2,206.83	6,582.17	8,779.25	3,185.58	1,432.57	7,965	45,621.97
2008	17,996.94	2,568.27	7,626.39	11,175.63	3,722.31	1,769.95	9,364	54,223.79
2009	18,481.22	4,761.22	9,013.98	11,536.84	3,949.35	1,483.81	10,295	59,521.59
2010	21,093.48	6,071.55	12,843.54	12,843.54	4,837.27	2,027.83	15,179	73,210.79

4. 대중국 투자현황의 변화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더욱 증가하여 2007년 5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줄었던 투자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2011년까지 대 중국 직접투자는 총 22,552건, 약 368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전체 해외직접투자 건수(54,149건)와 금액(1,930억 달러)

3)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

의 각각 41.6%, 19.0%에 해당한다. 건당 투자규모는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황재한, 2012). 최근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규모가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 이승신 외(2011)는 한국의 기존 투자 업종과 방식이 산업구조 고도화가 일어나는 중국에 적합하지 않고, 소규모기업에 비하여 대규모기업의 경영실적이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 2>에 의하면 2001년 대비 대 중국 투자는 2005년 436.06%(2,818/646)가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552.47%(3,571/646)가 증가하였다. 10여년에 걸쳐 약 5배의 투

자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증치세 관련 업종의 투자는 2001년 대비 2005년에는 400.18%(2,454/613)의 투자증가가 이루어졌으며 2001년 대비 2011년은 486.04%(2,981/613)가 증가되었다. 영업세 관련업종의 투자는 2001년 대비 2005년에는 1,108.89%(342/31)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01년 대비 2011년에는 1,868.90%(576/31)의 투자가 증가하였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대 중국의 투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시 투자가 회복되고 있다. 또한 영업세관련 서스업의 투자 증가는 증치세 관련 업종의 투자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표 2> 한국수출입은행 국가별 해외투자통계(중국)(단위 : 백만달러)

업종 \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제조업	597	972	1,586	2,167	2,290	2,902	3,805	2,325	1,697	2,739	2,767
도매 및 소매업	16	12	54	56	165	138	169	532	157	216	21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	0	0	0	0	11	8	1	2	9	10
건설업	1	31	14	36	68	88	133	134	66	30	41
운수업	2	4	4	1	25	11	50	60	22	39	51
숙박 및 음식점업	3	5	6	21	24	22	27	58	35	35	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8	8	5	6	15	30	25	18	9	23
금융 및 보험업	0	0	49	0	94	16	656	258	79	347	5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	26	36	38	52	92	177	77	26	14	5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2	2	8	14	50	71	59	30	128	31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3	1	2	17	3	7	5	3	2	6
교육 서비스업	1	2	3	6	7	4	4	6	5	6	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	7	16	11	15	49	54	59	18	8	3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3	5	3	21	6	15	15	2	28	6
농업, 임업 및 어업	2	4	5	10	8	12	19	8	7	6	4
광업	0	0	2	3	14	20	44	141	3	4	11
합계	646	1,079	1,791	2,368	2,818	3,439	5,268	3,764	2,169	3,619	3,571
증치세관련투 자 ⁴⁾	613	984	1,640	2,223	2,454	3,040	3,974	2,858	1,854	2,955	2,981
영업세관련투 자	31	90	145	133	342	367	1,232	758	306	655	576
면세관련투자	2	4	7	13	22	32	62	149	9	9	14

5. 한국기업의 대응동향

최근에는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도소매·유통에서는 삼성SDI,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물론 소망화장품, 태창기업, 금영, 웅진코웨이 등 중소기업들도 다수 진출하고 있다(황재한, 2012). 운송·물류에서는 한진해운, 금호고속, 대한통운, 현대상선 등 대기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범한, 판토스, 세진로지스틱, 흥아해운, 천일정기화물자동차 등 전문업체들도 진출하고 있다(조현승

외, 2012).

이와 같은 서비스업의 투자 증가에 대하여 황재한(2012)은 중국의 투자상황변화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적극 확대해 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서비스시장 진출 등 통하여 다양한 수출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한다. 중국 정부가 ‘서비스무역 발전 12차 5개년 계획 개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 등을 통해 서비스분야에 대한 육성과 개방 폭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서비스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서비스기업이 중국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 문화의 현지화도

4) 증치세, 영업세, 면세관련 투자의 구분은 단순히 업종별로 구분하여 합계를 낸 것이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증치세로 보았으며, 농업어업임업 및 광업은 면세로 보았다. 나머지는 영업세로 보아 그 규모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구분에는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영업세와 증치세의 혼합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영업세와 증치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대체적으로 업종에 따라 구분되므로 단순하게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반드시 필요하다(조현승 외, 2012). 다양한 업종의 중국진출의 한 예로서 의료서비스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장영일·김경환, 2012). 의료서비스에서 연세SK병원은 철저한 현지화를 통하여 중국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IV. 영업세와 증치세에 대한 개관

영업세와 증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한다. 부가가치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과세베이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영업세와 증치세로 나누어져 여러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영업세와 증치세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증치세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영업세와 증치세의 차이점

첫째, 과세대상의 차이이다. 영업세는 가공·수리·수선용역의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여 취득한 영업액(수입금액 전체를 의미함)을 과세대상

으로 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며, 증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가공·수선용역이다. 증치세의 과세대상 재화 또는 가공·수선용역에는 영업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영업세 과세대상인 교통운송업·건축업·금융보험업·우편통신·문화체육업·오락업, 무형자산의 양도 및 부동산의 양도·임대에는 증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영업세와 증치세는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며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영업세와 증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중국이 1차, 2차 산업 위주에서 서비스산업이 점차 발전하는 가운데, 용역의 제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목인 영업세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영업세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이 다른 경우 세부담도 서로 다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증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매입세액공제의 차이이다. 영업세는 매 단계마다의 영업액(수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이전 단계의 매입금액에 대한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영업세는 증치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과세용역 등을 제공하는 각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다단계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증치세의 납세자가 이전 단계의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과 달리 영업세의 납세의무자는 이전 단계에 부

담한 증치세 또는 영업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셋째, 영세율과 환급제도이다. 영업세에는 영세율과 환급제도가 없으나 증치세는 영세율과 환급제도가 있다. 증치세는 재화의 수출을 촉진하고 소비자와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2.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증치세·영업세의 비교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는 간접세, 소비세, 다단계거래세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증치세는 중국 국내의 재화의 공급 및 가공·수선용역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영업세는 가공·수선용역 이외의 모든 용역, 무형자산의 양도 및 부동산의 양도와 임대에 대하여 과세한다. 중국은 한국에 비하여 영업세 및 증치세의 면세범위가 좁다. 예로 금융보험업의 경우 한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중국은 영업세 과세 대상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중국의 증치세 및 영업세의 과세표준은 유사하다. 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매출환입 및 매출할인을 공제한다. 한국

의 부가가치세는 1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증치세는 17%와 13%를 기본세율로 하며 기타의 특례세율이 있다. 영업세는 3%, 5%, 5%~20%의 세율이 있다. 중국의 부가가치에 대한 간접세는 매우 복잡하며, 세율의 적용시 복잡하고 어려움이 크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다단계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증치세 역시 다단계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엄격한 증치세 전용계산서제도 등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적용하되 이전 단계의 매입액(영업액)에 대하여 관련부담세액을 공제해 주지 아니한다.

V. 영업세와 증치세의 변화 동향

1.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의 문제점

간접세인 영업세와 증치세로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2012년 1월부터 상해를 시작으로 하여 영업세와 증치세를 통합하고 있으나, 아직도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현황은

한국 기업의 서비스업 진출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하에서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영업세와 증치세의 세율의 차이로 인한 문제

1.1.1 세부담 차이의 문제

영업세와 증치세의 세율의 차이가 매우 커서 그 부담이 크다. 업종별 과도한 세율의 차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는 또한 소비세와의 관계설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신재열, 2010). 금융보험에 대한 세율은 5%가 적용되어서 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오락업의 경우에는 20%로서 상대적으로 과중한 측면이 있다(龔輝文, 2010).

1.1.2 개인 노동을 투입하는 서비스 시장의 왜곡

증치세에 비하여 영업세의 조세부담이 크므로, 개인노동사업자나 서비스사업 부문에 대하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개인서비스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간접세는 산업에 중립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나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부담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는 점차 복잡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노동을 투입하는 거래에 관련된 서비스 업종의 중요성을 증가시킨다. 龔輝文(2010)과 李國華(2012)는 증치세와 분리한 영업세의 부과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중한 세금의 부과로 복지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

1.1.3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낮은 기여도

중국은 제조업이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물류나 서비스의 시스템은 제조업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물류 서비스에 대한 이중과세나 과다 징세가 기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의 산업총생산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구조를 효율적인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반 산업에 대한 발전을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龔輝文, 2010). 상하이에는 영업세 개혁의 최대 수혜자로, 3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상하이의 영업세 개혁 대상업종 납세기업은 총 15만 9천 개로 그중 약 90%이상기업의 세 부담이 감소하였고 감세 규모가 약 억 위안에 달한다.

2012년 상하이 지역총생산이 7.5% 성장하였고 그중 3차 산업이 1.06%증가하면서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처음으로 상하이 GDP의 60%를 돌파하

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영업세 개혁이 2012년 상하이 경제성장률의 0.6%를 견인하고 1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추산하고 있다(KIEP북경사무소브리핑, 2013).

1.2 매입세액불공제와 관련한 문제

1.2.1 공제사슬의 중단과 중복과세의 문제

소비세로서의 중립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전단계 부담세액의 공제나 감면이 이루어져 공제사슬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증치세는 과세범위가 좁아 매입세액 불공제가 많다. 증치세는 재화의 판매(부동산 제외)와 가공 수선용역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있다. 교통운송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 체육오락업 서비스업 무형자산의 양도 및 부동산의 판매에 대하여 영업세를 부과하므로 증치세의 과세범위가 매우 작다(신재열, 2010). 과세범위가 좁음에 따라 증치세 공제사슬이 중단되어, 납세자가 구입한 재화에 포함된 매입세액에 대해 일부는 공제가 가능하고 일부는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공제가 미흡하게 되어, 증치세 납세자 사이 및 서로 다른 납세자와 용역의 납세자 사이에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한다.

현행 증치세는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납세

자간 증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공제사슬(연결고리)이 끊어지는 문제점도 발생한다(張淑春, 2012).

증치세 과세재화를 영업세 과세용역을 창출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이미 징수당한 증치세의 공제가 불가능하고, 다시 새롭게 전액에 대하여 영업세를 징수하게 된다. 이 경우 일정부분에 대한 영업세와 증치세의 중복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신재열, 2010). 두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증치세와 영업세의 특성상 서로 다른 세목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산업간의 세부담이 불공평하고 중복과세의 문제가 나타난다(한상국·양광평, 2011).

고리가 끊겨져 있는 부분의 과세범위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증치세를 징수할 것인지, 영업세를 징수할 것인지, 세무기관과 기업간 또는 세무기관간에 쉽게 분쟁이 발생하고 세무징수의 어려움이 증가되어 세무행정효율을 떨어뜨리기도 한다(신재열, 2010).

1.2.2 국제 경쟁력의 약화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시장에서의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영업세와 증치세가 분리됨으로 인하여 영업세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세율 효과

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는 관련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열악한 지위를 갖게 한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목적이 단순히 중국 국내진출의 의도도 있지만 향후 전 세계로의 거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중국내에서의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龔輝文(2010)은 영업세와 증치세의 이중과세가 국제경쟁에서 중국의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여 소비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수출제품에 대한 간접세의 철저한 환급시스템의 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3 전용세금계산서 부실의 문제

영업세와 증치세가 분리되어 있고, 영업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므로 전용세금계산서에 대한 누락이 매우 크다. 거래 현장에서 전용계산서는 현금위주의 상거래관행, 기업의 물량위주의 판매전략, 영수증수수에 관한 국민일반의 관심부족, 낮은 납세의 식수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얽혀 전용계산서 질서확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전용계산서제도를 악용한 위장거래, 가공거래, 자료상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증치세의 건전한 세수 기능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전용계산서의 수취거부는 무자료거래나 위장

가공전용계산서 교부로 이어지고 거래상대방은 증치세 등을 탈루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다음 단계의 거래에서도 연결고리가 되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전용계산서제도 자체의 유효성을 위협하게 된다(신재열, 2010). 영업세와 증치세의 매입세액공제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전용계산서 적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1.3 조세귀속과 입법권한의 문제

1.3.1 조세의 귀속의 문제

증치세는 국세에 속하고 영업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지방세는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세의 부과가 때로는 각 지방정부의 사정을 감안한 강도 높은 세수관리로 인하여 지역별로 편차를 발생시킨다. 지방 기득권층이나 지방기관의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龔輝文, 2010). 또한 지역별 과세 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 과세관청의 협조가 어려워 그 조정이 매우 어렵다(신재열, 2010).

1.3.2 입법권한상의 문제

조세법률주의의 지배하에서 행정부의 법규정제정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본법을

부연 보충하는 것과 법률의 개별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규정을 하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신재열, 2010). 그러나 중국세법은 주로 국무원의 행정법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입법의 규정에 따르면 재정조세 등 국가경제생활의 중요사항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형식으로 공포해야 하나, 세법은 입법기관에서 제정하는 경우가 드물고 상당수의 경우 정부부처에 위임하여 제정하고 있다. 증치세잠행조례는 입법기관이 국무원에 위임하여 제정, 공포하였고, 국무원과 그 주관행정부문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세잠행조례에 대한 해석권, 수정권, 및 하급정부부문 또는 그 행정부문에 대한 명령집행권도 가지는데, 이는 입법권과 법률집행권이 하나의 주체에 의하여 행하여짐으로 인하여 법률 집행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한상국·양광평, 2011). 또한 국무원, 성급인민대표회의, 성급인민정부의 3개 기관이 제정한 세법은 그 적용순위가 동등해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⁵⁾

1.3.3 국가 및 각 지방의 자의적과세의 문제

증치세와 영업세가 혼재된 경우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정한 뇌물을 제공하거나 세무신고를 자의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증치세로 적용되는 것이 유리한 기업과 영업세로 적용되는 것이 유리한 기업이 나뉘어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세금적용을 위한 부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국가와 지방간의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李國華, 2012). 또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표로 하는 각 지방 정부가 영업세에 혜택을 주고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국가의 세금 징수에 장애를 주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潘衛清, 2011).

1.4 영업세와 증치세 과세대상의 혼합판매로 인한 문제

중국 증치세는 혼합판매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증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와 증치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판매활동을 혼합판매활동이라고 한다. 재화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단위**와 개인사업자의 혼합판매활동은 증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증치세잠행조례시행세칙 5조).⁶⁾ 증치세 비과

5) 세법의 적용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법률, 국무원의 행정법규, 성급 인민정부 3개 기관이 제정한 세법, 성급이하의 하위지방법규이다(신재열, 2010). 성급 인민정부 3개 기관이란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의 부문규장, 성급 인민대표자회의의 지방성법규 및 성급 인민정부의 지방성규장이자. 이들 3개 기관은 같은 순위를 가진다.
6) 단위란 기업, 행정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위, 기타단위 등이 포함된다(증치세잠행조례시행세칙 9조).

세 대상이 되는 용역이란 판매활동에 따른 교통운송, 건축, 금융 및 보험, 우편 및 통신,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및 서비스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증치세 비과세 대상은 본래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영업세와 증치세가 혼재되어 과세될 수 있다. 신재열(2010)은 혼합판매 행위의 구분은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전체를 증치세 과세대상으로 볼지, 영업세 과세대상으로 볼지에 대한 구분이며, 이는 전체에 대하여 17%의 증치세를 부과하느냐, 3%~20%의 영업세를 부과하느냐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한다. 이러한 규정은 한국 부가가치세의 부수재화와 용역에 대한 개념과 유사하다.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용역은 독립된 거래로 보지 않고 주된 거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서보욱, 2012).

潘衛清(2011)은 경제의 글로벌화의 진행과 상품서비스의 결합으로 인하여 영업세와 증치세의 세목의 구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2.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 현황

2012년 이후 상하이에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전환이 전국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베이징과 다른 지역도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가 긴밀히 상하이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점차적으로 전환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고 있다.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다. 최근 국무원 경영진 회의는 시범적으로 증치세 범위에 영업세 분야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財稅[2011]110号). 중국은 증치세와 영업세의 과세대상을 중첩되지 않도록 세수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해시를 시범지역으로 하여 영업세를 증치세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상해시는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고 그에 대한 효과의 측정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보고 상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약 13만개 기업을 심사하여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8월1일부터 연말 까지 북경, 천진, 강소, 절강, 안휘, 복건, 호북, 광둥 등 성급 행정단위와 영파, 하문 등의 도시를 시범지역에 포함시켜 교통운수업과 부분 현대화복무업에 대하여 증치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권석, 2013).⁷⁾

시범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수는 약 91만개 기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환대상업종에 우선적으로 교통운수업과 현대서비스업을 포함하였다. 교통운수업은 생산유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통운수업의 운수비용 및 고정자산은 증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증치세제의 전형적인 운용 사례가 될 수 있다. 현대서비스업은 국가경제사회발달척도의 중요지표가 되므로 개혁을 통하여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곧 국가의 종합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 현대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곧 제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업종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본래의 영업세 과세대상업종은 유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서비스업, 무형자산양도 및 부동산 매출이다. 2012년 시범 실시 업종은 교통운수업과 부분현대화복무업이었으나, 그 대상업종을 우편통신업, 철타로운수, 건축설비 등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3. 시범 통합시 나타난 변화

3.1. 서비스업의 성장

산업구조측면에서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원래 증치세의 주요 과세대상은 2차 산업이며, 영업세의 주요 과세대상은 3차 산업이었다. 그러나 영업세와 증치세를 통합함으로써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통합됨에 따라 양 산업간의 세부담이 형평을 이루게 될 것이다. 특히 3차 산업의 중복과세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제3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들의 수입을 증대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수준을 향상시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會計論壇, 2013). 상하이에서는 2012년 상하이 지역총생산이 7.5% 성장하였고, 그 중 3차 산업이 10.6% 성장하면서 3차산업의 부가가치가 처음으로 상하이 GDP의 60%를 돌파하였다(KIEP북경사무소브리핑, 2013).

3.2 지방세수 감소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營改增”)은 재정세수체제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 중앙세수와 지방세수의 분배 관계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통합 이전에는 영업세의 대부분은 지방세수였으며, 증치세는 중앙과 지방의 공통세수였다. 따라서 통합이후에는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이므로 다시 새롭게 중앙과 지방의 세수분배관계를 조정하여야

7) 부분현대화복무업은 창고저장, 운송, 하역, 운반, 박스분산, 박스조립, 박스수리, 박스청결, 소득, 훈증, 냉장 등으로써 제조업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다(會計論壇, 2013). 실질적으로 영업세를 증치세로 시범 통합한 결과 지방세수의 감소가 발생하였다(張淑春, 2012).

둘째, 세수징수관리체계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통합 이전에는 영업세는 지방세무국에서 징수관리하였으며, 증치세는 국가세무국에서 징수관리하였다. 따라서 통합 이후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세수징수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會計論壇, 2013).

3.3 일부 업종의 세부담의 증가

원래 증치세 납세자 입장에서 본다면 통합 후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들로부터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일부 납세자들은 증치세의 높은 세율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들의 세부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會計論壇, 2013). 시범사업 결과 일부 서비스기업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기업의 35.9%가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특히 조사대상 교통운송업의 58.6%가 세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조사대상 정보기술서비스업과 문화서비스업의 43.4%가 세부담이 증가하였다(杜秋娟, 2012).

VI. 및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통합방안 및 한국정부와 기업 대응방안

영업세 및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통합방안 및 중국진출 한국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대응방안

1.1 국가와 지방간의 관리체계 확립

국가와 지방 재정의 적정한 분배가 필요하다. 증치세로의 변화는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방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영업세의 국세로의 전환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증치세의 징수시에 국세청과 지방단체의 징세 협조가 중요하다. 또한 이에 따른 국세의 지방에의 분배도 중요하다. 이러한 협조에 따라 세금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영업세와 증치세의 관리시스템을 성, 시, 현으로 체계화하고, 지방, 국가, 세관의 관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1.2 통합과정에서 규정의 충돌에 대한 사전조정

중국세법은 시행령을 중심으로 과

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예규에 의한 자의적인 과세의 문제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영업세의 자의적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의 부문규장, 성급 인민대표회의 지방성법규와 성급 인민정부의 지방성규장사이의 충돌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을 동급으로 규정하고 상호간의 우열을 정해두지 않았다. 따라서 법규사이의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이나 전인대상무위가 결정할 때까지는 어느 법규를 적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각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신재열, 2010). 따라서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할 뿐만 아니라 사전적 조정을 통하여 복잡한 문제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기간의 단축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는 시행업무발안이 발표되었다. 財稅[2011]110호에 의하여 각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이 이를 따라 증치세 및 영업세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행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지역간의 과세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 중국대륙 및 홍콩지역 간접

세 주관 파트너 후건룽(胡根榮)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과세서비스 증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정책에 관한 통지》(財稅[2011]131号)가 나오고 나서 시행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상하이의 각지 세무부서는 여전히 서로 다른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일단 세금을 거두고 지침이 나오면 초과징수분을 환급해주려는 곳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지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추징권리를 보류하려 한다”고 밝혔다.⁸⁾ 이와 같이 통합기간 동안에는 많은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법의 변환은 매우 늦고 장기에 걸쳐 행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통합의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1.4 소규모 납세자의 보호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과정에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고 영업세의 변환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의 중국진출 기업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포함 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이다. 한국의 영세한 중소기업도 중국에 많이 진출하였다. 대기업(595건)보다 중소기업의 중국투자 건수가 훨씬 많은 7,769건인 반면, 건당 평균 투자규모는 대기업의 6%에 불과한 59만 달러로 중소·

8) 중소기업청(2012년 08월 17일) http://qingdao.sbc.or.kr/kr/bbs/board.php?bo_table=1&wr_id=1754.

벤처기업의 투자는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국가경쟁력분과 발표자료, 2011).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박종해·서상구, 2012). 한국도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이 많으므로 이러한 배려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비스업의 진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중국 진출이 점차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1.5 세율의 적정화

영업세와 증치세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세율의 조절이 필요하다. 영업세와 증치세의 이중과세적인 측면의 해소로 재화와 용역의 거래의 왜곡이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이 해소 된다고 하더라도 3%, 5%의 세율을 적용하던 교통운송, 건설, 금융 및 보험, 우편 및 통신, 문화, 체육업에 13%의 세율 또는 17%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부담의 평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1.6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과 납세의식의 제고

영업세와 증치세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용계산서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납세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용계산서의 발행범위가 매우 좁아 영업세 증치세가 소득세의 과세의 기본 자료가 됨에도 전용계산서의 발행범위가 매우 좁다. 따라서 이를 확대하고, 신용거래를 증가시킴으로써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를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2.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

2.1 중국세법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

영업세 및 증치세는 중국의 중앙집권적 입법체제로 인하여 예규형태의 집행조례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다. 독립된 입법기관인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에서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조세 규정은 집행기관인 행정부의 집행조례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정기관과 집행기관이 같다. 따라서 조세규정의 변화가 매우 심하며,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결정권한이 매우 크다. 또한 중국은 최근 산업구조와 세법의 변화가 매우 큰 상황 속에 있다. 중국진출 기업지원 차원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내의 이러한 대응은 매우 늦다. 매년 강화되는 세무조사와 증치세 세제개혁 등 낯설고 부담스러운 사업환경의 변화는 중국

법인 주재원과 본사 관리자의 시름을 더해주고 있다.⁹⁾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기업활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를 호소하며 세무관련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¹⁰⁾ 따라서 세법개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중국세법의 변화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생성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1월 까지 “국세청에서 보내드리는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중국 세정뉴스”를 제공하여 왔다.¹¹⁾ 그러나 2011년 1월 이후에는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러한 정보는 단지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중국조세에 대한 전문가가 주기적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또는 한국조세연구소에서는 중국세법의 개정사항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어려움에서 과세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정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과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특혜를 많이 주었으나 점차 중국 국내기업과의 형

평성을 위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기업과 내국기업의 소득세율을 통일하여 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하였으며, 외자기업의 탈세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비교적 관대하던 제조업에 대한 세무조사까지도 강화하고 있다(김주영, 2007). 최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와 세무조사 강화가 이루어지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¹²⁾ 이와 같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조치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다.

2.2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중국을 진출하는 한국의 서비스기업은 증치세 및 영업세의 변경에 따른 세부담의 변동상황을 파악하고 기업별 진출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어려움에서 과세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변경은 중국세법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한국기업의 진출전단계 투자의사결정에 큰 영향 미칠 수 있다.

영업세 통합 지역별 및 업종별로

9) 강화되는 중국 세무조사, 상공인 신문, 2013. 06. 12.

10) 중국진출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는? 중소기업신문, 2013. 6. 28.

11) 국세청 홈페이지 국제조세정보 중국세무안내방 “국세청에서 보내드리는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중국 세정뉴스 http://www.nts.go.kr/info/info_05_04_01.asp?minfoKey=MINF7720080211214205&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

12)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4가지 대응 포인트(2010. 0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mma124&logNo=20098731120>,

세계관련 변동에 대비하여야 한다. 중국의 증치세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변경하는데 1979년부터 1984년 까지 5년이 소요되었다. 영업세 개혁은 매우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역별·업종별로 순차적으로 변경해가고 있다. KIEP북경사무소브리핑(2013)에 따르면 건축업,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의 경우 영업세 개혁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장 마지막 단계에 세계개혁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들은 이러한 장기적인 변경과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각 기업별로 지역별·업종별 세부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과세부담 변화에 대한 파악과 대응은 향후 투자의 현재가치 평가나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2.3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교육의 활성화

중국의 서비스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정부 및 기업은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정보공유이나 교육이 활발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추징 받는 사례가 매우 많다. 이러한 추징의 원인으로 중국 공무원의 자의적인 과세로 인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한국기업이 중국세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도 많다. 박경하(2008)는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증치세가 추징되거나, 환급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¹³⁾

따라서 중국내 서비스업 투자의 증대에 따른 한국정부와 기업차원의 중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와 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VII.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중국내 서비스업의 경제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서비스 관련 기업의 중국진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세무관련 변화들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서비스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사회구조의 변화, 중국내서비스 산업의 동향, 용역과세의 강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국내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중국투자동향

13) 베이징 샹그릴라 호텔에서 중소기업중앙회·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신(新) 중 진출 전략토론회'(중소기업신문 2013. 6. 28)

의 변화 및 중국시장의 변화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속에서 서비스업과 관련이 높은 영업세와 증치세의 변화에 대하여도 연구하였다. 중국간 접세는 영업세와 증치세로의 분리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리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현재 영업세와 증치세를 통합하고 있지만 아직도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황은 한국 기업의 서비스업 진출에도 아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업에 관련된 세금인 영업세와 증치세에 대하여 그 특성,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와 증치세를 비교하였다. 영업세와 증치세의 변화동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의 세부담차이로 인한 문제, 매입세액불공제와 관련한 문제, 조세귀속과 입법권한의 문제, 영업세와 증치세의 과세대상의 혼합판매로 인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현황을 살펴보았다. 시범적인 적용상의 변화동향을 살펴보았다. 서비스산업의 성장, 지방세수의 감소, 일부 업종의 세부담의 증가 및 법인세 계산상의 문제를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업세 증치세의 통합방안 및 한국

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합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리체계 확립, 통합과정에서 규정의 충돌에 대한 사전 조정,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기간의 단축, 소규모 납세자의 보호, 세율의 적정화 및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과 납세의식의 제고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중국세법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자원의 신속한 대응, 기업별 진출전략의 수립과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교육의 활성화를 제시하여 한국정부 및 한국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서비스업 관련 변화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았다. 향후 중국진출기업의 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산업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서비스나 유통 업종의 중국 진출 증가에 따른 영업세를 중심으로 중국의 간접세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증치세에 관련된 소수의 연구만 있었다. 그러한 연구들은 영업세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업세와 증치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셋째,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중국세법에 관련 유의사항 고찰하였으며, 향후 중국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한국의 중국세법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하였다. 영업세 및 증치세는

세법재정의 결여, 중앙집권적 입법체계에 의하여 예규형태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내의 대응은 매우 늦다. 따라서 중국 세법개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향후 보다 상세한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철승. 2005. 한중증치세의 현황과 개혁방안.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 발표회 논문집: 1387-1419.
2. 고권석. 2013. 중국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http://cafe.naver.com/kclaw21/2647>
3. 국가경쟁력분과 발표자료. 2011. 중국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성과 결정요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김규형 · 장경천 · 사안기, 2010,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의 중국, 한국, 미국주식시장 사이의 spillover효과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29(2): 97-118.
5. 김영래 · 강청송. 2008. 한국제조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방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연구 19(2): 81-105.
6. 김주영. 2007. 중국투자기업세무조사 강화에 대비할 필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1-3.
7. 박경하. 2008. 중국진출 기업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세무문제 경험사례- 피할 수 없는 세금과 피할 수도 있는 세금(증치세 위주). <http://blog.daum.net/ivviiivvi/6362181>
8. 박종해 · 서상구. 2012. 중국 주식시장의 시가갭이 한국주식시장의 장중 수익률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1(3): 307-322.
9. 서보옥. 2012. 부가세실무. 세학사.
10. 신재열. 2010. 신중국세법해설. 어울림.
11. 이규택. 2004. 중국 3차 산업의 발전 전망 중국 3차 산업의 발전 전망. 중국학논총. 18: 625-652.
12. 이승신 · 최필수 · 여지나. 2011. 2011년 양회(兩會)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11(4): 1-2.
13. 이택곤. 2010. 중국진출시 알아야 할 중국의 세무와 회계.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3.
14. 장영일 · 김경환. 2012. 국가이미지와 국가에 대한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한 태도가 중국 소비자들의 외국계 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1(2): 173-197.
15. 조현승 · 조철 · 박정수 · 김숙경 · 김천곤. 2012. 우리나라서비스기업의 대중국진출현황과 전략. 산업경제정보. 530: 1-12.
16. 한상국 · 양광평. 2011. 중국 증치세제도 개혁에서의 입법문제와 전망. 중국법연구. 15: 89-109.
17. 홍동문. 2007. 한 · 중 서비스산업의 교역자유화 및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15: 327-360.
18. 황재한. 2012. 대 중국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 중국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에

-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3(3): 193-212.
19. 龔輝文(공휘문). 2010. 關於增值稅、營業稅合并問題的思考(관간증치세, 영업세합병문제적사고). 稅制改革. 300: 41-43.
 20. 杜秋娟(두추연). 2012. 營業稅改征增值稅政策操作指南與會計實務(영업세개정증치세정책조작지남여회계실무). 中國市場出版社. 1-15.
 21. 潘衛清(반위청). 2011. 增值稅、營業稅兩稅合并問題探討(증치세, 영업세양세합병문제탐토). 時代金融 465: 20-21.
 22. 李國華(이국화). 2012. 增值稅及營業稅兩稅合并問題研究(증치세급영업세양세합병문제연구). 納稅籌劃. 63-64.
 23. 張淑春(장숙춘). 2012. 關於增值稅營業稅的若干問題思考(관우증치세영업세약간문제사고). 公共管理. 94-95.
 24. 財稅[2011]110号. 2011. 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於印發 《營業稅改征增值稅試點方案的通知》(영업세개정증치세시점방안적통지).
 25. 財稅[2011]131号. 2011. 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於印發 《關於應稅服務適用增值稅零稅率和免稅政策的通告》(관어응세복무적용증치세영세율화면세정책적통지).
 26. 中華人民共和國營業稅暫行條例實施細則(중화인민공화국영업세잠행조례).
 27.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28. 會計論壇. 2013. 海南日報 編輯部 06월 13일.
 29. KIEP북경사무소브리핑. 2013. 중국 영업세 개혁의 주요 내용 및 향후 파악. KIEP 북경사무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7). 1-8.
 30. KIET산업경제정보. 2012.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의 대중국 진출현황과 전략. e-KIET 산업경제정보(산업연구원) 530. 1-12.

Abstract

Research on the Investment environment changes and the business tax and value added tax in China

Park, Sang-Seob* · Shin, Jae-Yeol** · Pyun, Marley***

The trend of China's industry has been changed from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cheap labor market to service industries gradually as a whole. The investment of Korean corporations toward Chinese service industry is gradually being increased. The importance of Chinese service industry related taxations such as business tax and value-added tax are growing.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the changes of investment environment and does the business tax and VAT of growing importance in China.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taxation on services is mainly related to the business tax or VAT,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changes of present condition of investment and corresponding trends of the Korean corpo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investment environment changes tied to the business tax and the VAT in China. With regard to the business tax and the VAT, this study looks into their features and tax requisition and also makes comparison between them and VAT of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and situations from the cases of separation, integration and trial integration of the business tax and VAT, and also doe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above two taxation and the corresponding strategy of Korea and her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hanging trends of investment environment and the business tax and VAT and to present corresponding plan for the corporations advancing into China.

Key Words: Business tax, Value added tax, China Tax Law, Indirect Taxation, Investment into China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ax & Accounting Information, Suwon Science College
(Main author), titi2772@hanmail.net

** CTA, Tax Firm Regen(Corresponding author), taxshin@hanmail.net

*** President, TTC(Corresponding author), 0193145659@hanmail.net